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14,976,695	12,449,301
일반회계	410,471,274	12,314,138
특별회계	4,505,421	135,163
기타특별회계	4,505,421	135,163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026,824	60,805
주택사업특별회계	117,624	3,529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234,989	37,050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42,000	7,26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80,304	17,409
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303,680	9,110

제 2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509,919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.